

경제혁신

www.kipo.go.kr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보도자료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사무관 박종필	042-481-5154
	2015년 4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4월 22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에게 '우수인재 이탈방지', '세금·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까지 1석 3조 효과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4년도 기준으로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2년 43.8%, '13년

46.2%, '14년 51.5%(출처 :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이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도입 사유 >

구 분	기업의 인식부족**	도입방법 모름	타직원과 형평성	별도 인센티브 제공
비 율	49.6%	26.8%	9.8%	12.1%

* 출처 :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보상금을 지급 필요 없음(17.0%), 도입의지 없음(21.0%), 기업에 부담됨(11.6%)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

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4.3.1.~‘16.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예정)
(특허청)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全过程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 On-line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1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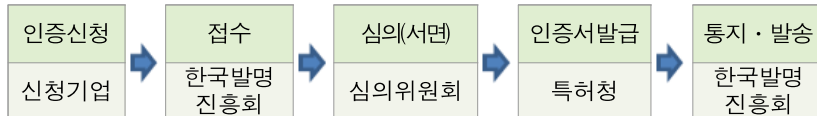
- (운영방안)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근거 :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1조의의2 및 「우수기업 인증 운영요령」

-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신청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 (인증절차)



-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신청 가능
- * 인증서의 발송 : 통지 후 1주일 내에 우편등기 발송

- (심의기준) 보상기준·보상절차 등 보상규정의 체제, 보상실적,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 여부

<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 **보상규정(20점)** : 보상규정 유무, 승계절차·보상기준·보상절차 등 규정 여부
- **보상실적(40점)** : 보상실시(비금전적 보상 포함), 보상량, 실시·처분 보상 등
- **합리적 운용(40점)** :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기준 제시, 이견 및 분쟁조정 등
- * 보상규정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임

- (인센티브)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일부 감면 등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16.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 아래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특허청 지원사업	
민간 IP-R&D 전략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IP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일반)
	특허기술거래컨설팅 지원 (추후 공고 예정)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추후 공고 예정)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만관공동투자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무료)
 - 직무발명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 사업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 → 참여마당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02-3459-2850, 2848)

참고2

기업맞춤형 컨설팅 신청 안내

□ (운영방안) 컨설팅 및 인증제 간 연계성 확립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컨설팅 이원화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여 미도입기업의 제도 도입 유도 및 도입기업의 인증제 신청 유도

□ (신청자격)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 (수혜 기업 및 컨설팅 전문가 선정)

- 기업 선정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기초로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활성화 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정
- 컨설턴트 선정
 - 사전교육*을 완료한 컨설팅 전문가 중 기업의 산업 분야 및 지역 고려하여 선정

* 상·하반기 총 2회 실시, 컨설팅 매뉴얼 및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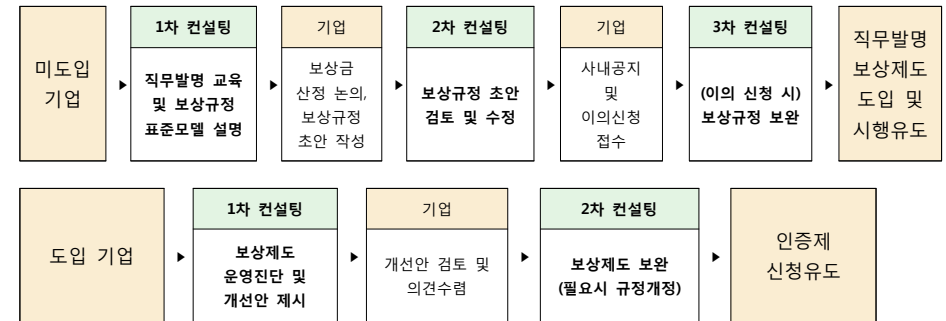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 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 (지원절차)

- 컨설팅 이원화 시스템 도입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의 컨설팅 이원화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수행(필요시 2회 이상 단계별 실시)



- 컨설팅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수혜 기업의 체계적 관리로 기업의 인증신청 유도
 - 컨설팅 후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컨설팅 전문가 사후관리 강화 및 컨설팅 효과 제고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 운영 개시로 기업의 편의성 도모
 - *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기업맞춤형 컨설팅 신청 및 확인 시스템 운영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02-3459-2848, 2850)